

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59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적 기능 지속 수행 도모
- 정부 치매정책사업의 공립요양병원 업무 현행화 등

주요내용

- 치매정책사업 공립요양병원 업무 현행화(안 제3조)
- 공립요양병원 예산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병원의 책무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기능 재정립(안 제8조)
- 「의료법」 준수사항에 대한 중복 삭제 및 내용의 간결화(안 제9조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4. 9. 6. ~ 9. 26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”를 “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”으로, “수립”을 “수립 및 시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노인성질환”을 “노인성 질환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.

2.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외래·입원진료와 단·장기적인 요양 서비스
3.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관리
4.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임상·역학적 조사연구
5.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
7. 제1호부터 제6호 이외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사업
8.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와 요양 등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

제4조제2항 중 “결정 하되”를 “결정하되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위탁 받은 자”를 “노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,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,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.

제8조(종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”을 “병원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

례만”으로, “보궐위원”을 “보궐로 위촉된 위원”으로 한다.

2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

제6조(종전의 제7조)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행하게”를 “대행하게”로 한다.

②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운영규정) 수탁자는 노인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·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보건정책과장 신 영 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보건행정팀장 최 선 주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영 연 (행정 5909)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업무) 노인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	제3조(업무) ----- 각 호-----
1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	1. --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-- 수립 및 시행
2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	2.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외래·입원진료와 단·장기적인 요양 서비스
3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·단기적인 요양 서비스	3.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관리
4.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	4.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임상·역학적 조사연구
5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 간호	5.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
6.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	<삭 제>
<신 설>	7. 제1호부터 제6호 이외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사업
7.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	6. ----- 노인성 질환-----
8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·연구	8.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와 요양 등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
9.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	<삭 제>

된 사업 등

제4조(입원 및 퇴원) ① (생 략)

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 하되, 퇴원 이후 보건소, 요양시설,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제5조(의료수가) ① (생 략)

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 받은 자가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립노인 전문병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(생 략)

<신 설>

2. (생 략)

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, 위촉 직 위원은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입원 및 퇴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결정하되

-----.

제5조(의료수가) ①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노인병원 운영을 위탁
받은 사람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-
-----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병원장은 -----

-----.
② -----
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③ -----

----- 시장
---.

1. (생 략)

2. (생 략)

④ (생 략)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
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
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
기로 한다.

⑥ (생 략)

제7조(위탁운영) ① (생 략)

1. ~ 3. (생 략)

② 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
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
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노인병
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
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
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
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, 의료장비
구입 등 노인병원의 유지 · 관리를 위
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
있다.

④ · ⑤ (생 략)

제8조 (생 략)

제9조(관리규정)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

1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한 차례만 -----,
보궐로 위촉된 위원-----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탁운영) ①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
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
할 수 있다.

③ -----

----- 대행하게 -----
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9조(운영규정) 수탁자는 노인병원 운 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

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·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삭 제>

1. 목적 및 운영방침(치료, 간호, 보호,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)

<삭 제>

2. 직원의 정원 · 직종 및 직무 내용

<삭 제>

3. 입원자의 정원

<삭 제>

4. 의사 등 직원의 주 · 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

<삭 제>

5.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

<삭 제>

6.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

<삭 제>

7. 비상재난(화재 등)에 대한 대책

<삭 제>

8. 그 밖에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596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12월 4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함.

□ 주요골자

- “노인병원을 위탁받은 사람” 을 “노인병원을 위탁받은 자”로 함.
(안 제5조)

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“**사람**” 을 “**자**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의료수가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기준을 적 용받지 아니하는 항목 에 관한 의료수가는 <u>위 탁 받은 자가 안산시장</u>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5조(의료수가) ①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노인병원</u> <u>운영을 위탁받은 사람</u> <u>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</u> -----.	제5조(의료수가) ① (개 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자</u> ----- -----.